

2023 년도

에너지 진단제도 안내





2023년도

에너지 진단제도 안내



CONTENTS

01 에너지진단제도	05
02 에너지진단 기준 조정	08
03 에너지진단 연기	09
04 에너지진단 면제·연장	10
05 에너지진단 제외	12

참고

01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현황	14
02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안 이행시 투자 지원제도	19
03 에너지관리기준	21
FAQ	23

2023 년도

에너지 진단제도 안내



01 에너지진단제도

에너지진단 개요

①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 개별 사업장의 에너지이용흐름을 파악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관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에너지진단은 사전조사/현장진단/분석 및 보고서작성의 3단계로 진행

단계	주요내용
사전조사	▶ 에너지이용시설 및 설비관련현황/에너지사용형태/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등 현장진단을 위한 사전조사
현장진단	▶ 에너지운영시스템 점검/설비별 운전 성능 및 운전 상태를 파악하고 측정 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실시 ▶ 에너지손실요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개선안 투자 경제성 분석
분석 및 보고서작성	▶ 현장진단 시 도출된 개선방안을 상세분석하고 에너지진단보고서 작성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표1]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법령

진단대상자

① 원료 및 이동시설(차량/항공기/선박 등)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전력,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에너지진단 주기

연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진단 주기
20만toe 이상	5년(부분진단 : 3년)
20만toe 미만	5년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별표3] 에너지진단주기

*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 가능



에너지진단 진행절차

단계	주요내용	비고
1단계 진단실시안내	▶ 공단이 진단대상자에게 진단신청에 필요한 사항 통지(진단 전년도 8월 말까지)	공단 ◯ 진단대상자
2단계 진단신청 및 계약	▶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신청 및 진단계약 체결(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진단대상자 ◯ 진단기관
3단계 진단일정 통보	▶ 진단기관은 진단대상자와 협의된 진단수행일정을 통보(진단개시 3일 전까지)	진단기관 ◯ 공단
4단계 현장진단실시 및 보고서작성	▶ 에너지사용현황 분석, 측정 및 문제점 발굴, 원인분석 및 개선안 발굴 ▶ 경제성 분석 및 진단결과 최종 협의(강평) ▶ 개선방안 및 투자 경제성 상세분석 진단보고서 작성·제출	진단기관
5단계 고객만족 설문조사	▶ 진단완료 후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진단대상자 ◯ 공단
6단계 진단보고서 제출	▶ 진단기관은 최종적으로 진단보고서/ 관리기준점검표/ 이행투자계획서를 제출	진단기관 ◯ 공단
7단계 개선이행 실태조사	▶ 진단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개선안 이행실태조사 및 기술지도 실시	진단기관 ◯ 진단대상자
사전 협조사항	▶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 제공 ▶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안내 및 설명 ▶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장비의 지원 ▶ 기 작성한 에너지관리기준점검표 제공 등	

진단기관 종별 에너지진단 수행범위

구분	1종 진단기관	2종 진단기관
수행범위	식품, 섬유, 제지목재, 화공, 요업, 금속, 산업, 기타, 건물 업종의 전체 사업장을 진단	산업기타, 건물 업종의 전체 사업장과 식품, 섬유, 제지목재, 화공, 요업, 금속 업종의 1만toe 미만 사업장을 진단

- * 업종 구분은 에너지사용량 통계(에너지사용량 신고) 기준
- * 진단기관의 1·2종 구분은 진단수행범위 구분으로 진단기관의 진단품질과는 무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등급)에 해당하는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을 준수

에너지사용량	등급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보고서 작성	합계		
20만toe 이상	A5	29	21	50	4	200
10만toe 이상 ~ 20만toe 미만	A4	25	18	43	4	172
5만toe 이상 ~ 10만toe 미만	A3	21	15	36	4	144
2만toe 이상 ~ 5만toe 미만	A2	17	12	29	4	116
1만toe 이상 ~ 2만toe 미만	A1	14	9	23	4	92
5천toe 이상 ~ 1만toe 미만	B	11	8	19	3	57
2천toe 이상 ~ 5천toe 미만	C	8	5	13	3	39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표1]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법령

- * 현장진단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
- * 소요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하며, 최소기준을 진단하는 경우 기술인력 [아]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1인 이하로 제한

주의사항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이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진단을 수행할 경우 적법한 에너지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재진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02 에너지진단 기준 조정



에너지진단 기준 조정 대상 및 신청 증빙서류

- ① 특정 설비의 에너지사용량 비율이 높은 경우, 기준조정 가능
 - 에너지진단 시 필요한 소요일수 및 인력 최소기준을 하향 조정
 -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에너지진단 실시 가능

에너지진단 기준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1) 특정설비 1대의 에너지사용량이 사업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기준 조정 신청 설비 목록 및 설비 사양서 ▶ 사업장 에너지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전기요금청구서 등)
2) 동일 유형 설비의 에너지사용량이 사업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설비 에너지사용량 확인 가능한 조업일지 (일별/월별)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표 1(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비고 제3호

* 현장확인 등 검토 이후 에너지진단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준 조정이 불가할 수 있음

연기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6)

03 에너지진단 연기

에너지진단 연기 대상 및 신청 증빙서류

- ①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기 가능
- 에너지진단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진단연기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

2023년으로 에너지진단 주기를 배정받은 사업장이 에너지진단 연기 신청을 통해 2024년에 진단을 수행하여도, 다음 에너지진단 주기는 기존 배정받은 2023년 기준 5년 후인 2028년임

에너지진단 연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1) 천재지변, 부도 또는 휴업으로 사업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부도 : 관련뉴스/보도자료 등 ▶ 휴업 : 스케줄표 등
2) 행정처분, 노사분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진단을 못 받는 경우	▶ 행정처분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등 ▶ 노사분규 : 관련 증빙 서류 등
3) 공정변경, 증설 또는 수리 등으로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사·수리 계약서 등
4) 2년 이내에 에너지진단 대상사업장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이전 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5) 진단대상자가 특정 공정·설비의 폐쇄, 회사의 분할 등으로 에너지사용량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 등
6) 3년 이내에 건축되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서, 건축물 등록대장, 에너지사용설비 계약·설치서 등
7)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 회생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관련 판결문 ▶ 재무제표 등 경영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6조(에너지진단 연기 등)

* 현장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에너지진단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기가 불가할 수 있음

04 에너지진단 면제·연장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 주기 연장 대상 및 범위

① 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 주기 연장 신청 가능

대상사업장	면제 또는 연장 범위
1-1) 에너지절약 이행실적 우수사업자 가.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소기업인 경우) 나.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가 : 에너지진단 1회 면제 나 : 1회 선정에 진단주기 1년 연장
1-2)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 ▶ 절감률 4% 산출근거 : 우수사업장 인증 당시 계량 평가 결과 절감률	▶ 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2) 에너지절약 유공자	▶ 에너지진단 1회 면제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 진단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한 사업장을 말함	▶ 1회 선정에 진단주기 3년 연장
4) 지난년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장	▶ 에너지진단 1회 면제
5)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자로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 ▶ 절감률 4% 산출근거 : (Σ절감량 / 구축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 Σ절감량 : 설치확인서 발급 당해연도 포함 최대 3년 이내 절감량의 총합 * 구축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 설치확인서 발급 직전년도 에너지사용량	▶ 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6)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제외	▶ 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②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면제·주기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면제·연장 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6)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 주기 연장 신청 증빙서류

대상사업장	증빙서류
1-1) 에너지절약 이행실적 우수사업자 가.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중소기업인 경우) 나.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1-2)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 ▶ 절감률 4% 산출근거 : 우수사업장 인증 당시 계량 평가 결과 절감률	▶ 우수사업장 인증서 ▶ 우수사업장 인증보고서 등
2) 에너지절약 유공자	▶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등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 진단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사업장을 말함	▶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 에너지진단 보고서 ▶ 최근년도 에너지진단 이행실태 및 기술지도 보고서 ▶ 에너지절감 실적서 등
4) 지난년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장	▶ 친에너지형 설비 인증서 -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 -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 친에너지형 설비별 에너지사용량 ▶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등
5)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자로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 ▶ 절감률 산출근거 : (Σ절감량 / 구축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 Σ절감량 : 설치확인서 발급 당해연도 포함 최대 3년 이내 절감량의 총합 * 구축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 설치확인서 발급 직전년도 에너지사용량	▶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서 ▶ 에너지효율개선 활동 및 실적 등
6)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이행실적평가 결과 등

05 에너지진단 제외



에너지진단 제외 대상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라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진단대상에서 제외 가능

에너지진단 제외 대상	해당 법령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제2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
창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8호
2인 이상 소유의 판매시설이며, 공동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인 사업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3호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제2호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광업/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파이프라인 운송업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④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3조(진단대상사업장 등)제1항제2호

제외 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6)



에너지진단 제외 신청 증빙서류

에너지진단 제외 대상	증빙서류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발전사업 허가증 ▶ 건축물등록대장 등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록대장 등
오피스텔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창고업 등록증 ▶ 건축물등록대장 등
2인 이상 소유의 판매시설이며, 공동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인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업체현황 ▶ 공동사용에너지설비 에너지사용량 ▶ 건축물등록대장 등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업체현황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 건축물등록대장 등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 관련 서류 등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 건축물등록대장 등
광업/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사용량신고 시 기입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제외(별도 증빙 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 광업 관련 코드 -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 3520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500

참고

01 에너지진단전문기관 현황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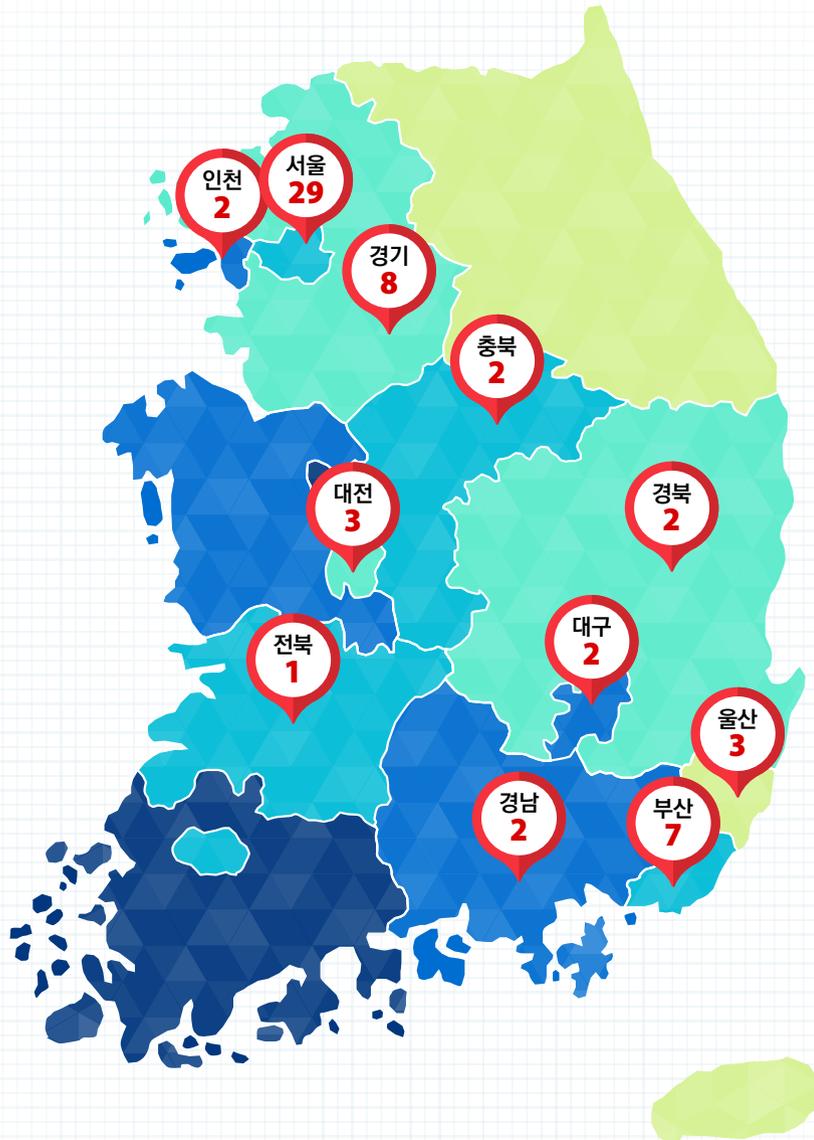
지역별 진단기관

('22. 7월 기준)

지역	지정구분	진단기관명	연락처	지역	지정구분	진단기관명	연락처
서울	1종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02-2675-3436	부산	1종	(주)삼성그린에너지	051-714-0577
		(주)동양티피티	02-3407-1863			(주)에너제닉	051-504-0806
		(주)미래비엠	02-2280-5639		(주)세풍전기	051-314-0201	
		(주)아텍에너지	02-890-6411		(주)피이지	051-924-6933	
		(주)하나기연	02-562-3894		부산환경공단	051-760-3386	
		SSE엔지니어링(주)	02-529-7267		에너지절감사업	051-811-2277	
		대일이엔씨기술(주)	02-2025-7543		엔플러스(주)	051-714-3502	
		에너지기술서비스(주)	02-3667-0404		1종	(주)신일이앤씨	053-665-8700
		엘지전자(주)	02-2033-2649			2종	(주)신덕
		현대엔지니어링(주)	02-2134-1937		1종		(주)코아에너지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02-6911-4546	2종	(주)제이에이치에너지		032-573-5570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02-6287-0852		1종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042-670-3184	
	(주)그린테스코	02-3487-8457	2종		한국수자원공사	042-629-3675	
	(주)기성이앤씨	02-2105-9924		1종	(주)아이피티씨	042-867-5791	
	(주)기장엔지니어링	02-467-2555	1종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662	
	(주)빌컴	02-2280-1930		2종	(주)경동도시가스	052-219-5377	
	(주)에너지서베이	02-2068-3517~8	1종		(주)네오그린	052-260-9200	
	(주)에스윈	02-2131-7629		1종	(주)대명기술단	031-223-1943	
	(주)에코시안	02-2621-9800	2종		(주)삼천리	031-8043-6347	
	(주)유호스트	02-523-3970		1종	(주)엔자인	031-426-9450	
	서울에너지공사	02-2640-5333	2종		(주)이에스엘	02-6299-7738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02-3146-1365		2종	금호이앤지(주)	02-6004-6014	
	에너지관리기술(주)	02-6124-6253	주식회사 무한에너지		031-548-0536		
	에너지닥터 주식회사	02-1661-8429	주식회사 영찬이앤씨	031-466-7625			
	주식회사 누리앤소방전기안전	02-597-2356	주식회사 케이티	02-500-6360			
	주식회사 에너지프로	02-3493-5324	2종	(주)미래이앤지	043-211-5180		
	주식회사 에너지팩솔루션	02-6204-1967		(주)오션엔지니어링	043-236-6408		
	지멘스(주)	010-4697-9383	2종	(유)승현	063-236-0767		
하이엠솔루텍(주)	02-6940-0600	2종		(주)성우이앤씨	053-716-0160		
경남	1종				2종	(주)알씨씨	054-223-2305
		(주)에너킵				055-323-1640	
	2종					(주)화광이앤이(E&E)	055-296-7720

진단기관 정보는 상시 변동 가능하며, 실시간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지역별 진단기관 업체 현황





2021년 진단기관 평가 등급

등급	기관수	해당기관('가나다' 순)		
우수	S	3	(주)에너지닉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주)하나기연	-
	A	6	(주)그린테스코	(주)에너지킵
			(주)세풍전기	(주)엔자인
			(주)신일이앤씨	(주)화강이앤이(E&E)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에너지서베이
			(주)대명기술단	(주)코아에너지
			(주)동양티피티	(주)피이지
	B	14	(주)미래비엠	에너지기술서비스(주)
			(주)삼성그린에너지	에너지절감사업
			(주)신덕	애플러스(주)
			(주)아텍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주)제이에이치에너지
			(주)기장엔지니어링	SSE엔지니어링(주)
			(주)빌컴	대일이앤씨기술(주)
			(주)성우이앤씨	부산환경공단
	C	17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주)오션엔지니어링			에너지관리기술(주)	
(주)유호스트			지멘스(주)	
(주)에스원			하이엠티루텍(주)	
(주)이에스엘			-	
(주)경동도시가스			서울에너지공사	
(주)미래이앤지			주식회사 케이티	
(주)에코시안			-	
미흡	E	10	(주)알씨씨	(주)아이피티씨
			(주)삼천리	현대엔지니어링(주)
			(주)네오그린	신세계건설(주)
			(주)기성이앤씨	(주)부산도시가스
			에너지닥터 주식회사	엘지전자(주)

비고 1) 평가제외 기관

* 관리/감독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21년도 신규 진단기관

금호이앤지(주)	주식회사 누리앤소방전기안전	주식회사 영찬이앤씨
주식회사 에너지프로	(유)승현	주식회사 에너지팩솔루션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 평가등급

* 진단품질향상/진단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진단대상 사업장에게 우수 진단기관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진단기관의 진단 수행현황을 종합평가하여 6등급(S,A,B,C,D,E)으로 구분



2021년 에너지진단 추진실적

1종 진단기관

No	진단기관명	진단 건수 (건)	진단대상 에너지 사용량 (toe/y)	개선안						
				건수 (건)	에너지 절감량 (toe/y)	절감률 (%)	절감금액 (백만원/y)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온실가스 감축량 (tCO2/y)
1	(주)동양티피터	98	773,651	664	39,201	5.1	27,163	80,056	2.9	78,178
2	(주)엔자인	81	2,237,969	486	111,632	5.0	52,871	168,480	3.2	245,883
3	(주)코아에너지	78	624,583	440	21,863	3.5	13,561	34,953	2.6	44,809
4	(주)에너지닉	49	835,168	296	33,420	4.0	16,363	53,553	3.3	67,624
5	(사)한국에너지 기술인협회	44	1,576,107	320	27,296	1.7	15,840	34,721	2.2	54,625
6	에너지기술서비스(주)	37	448,279	175	9,738	2.2	5,094	15,921	3.1	19,567
7	(주)삼성그린에너지	36	479,076	211	17,709	3.7	9,924	53,759	5.4	35,683
8	(주)하나기연	29	1,577,108	161	15,544	1.0	7,768	12,035	1.5	31,930
9	(주)신일이앤씨	25	241,520	199	10,667	4.4	6,132	26,123	4.3	21,825
10	SSE엔지니어링(주)	13	152,918	49	5,478	3.6	2,848	7,269	2.6	11,409
11	(주)에너지킵	13	99,228	79	6,104	6.2	3,545	12,598	3.6	12,524
12	한국에너지공단	12	7871,838	221	214,272	2.7	125,700	276,597	2.2	637,311
13	한국수자원공사	9	107,598	14	6,027	5.6	2,914	3,832	1.3	12,063
14	(주)미래비엠	9	35,062	42	597	1.7	337	1,286	3.8	1,196
15	(주)대명기술단	9	38,746	46	3,611	9.3	1,820	3,916	2.2	7,287
16	(주)아텍에너지	8	424,262	95	15,972	3.8	8,570	14,029	1.6	32,367
17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6	316,151	25	3,824	1.2	1,874	3,609	1.9	7,798
18	대일이앤씨기술(주)	3	11,922	16	291	2.4	158	310	2.0	583
19	현대엔지니어링(주)	1	2,671	5	105	3.9	67	65	1.0	211
총합계		560	17,853,855	3,544	543,353	3.0	302,548	803,109	2.7	1,322,874

* 진단건수 순이며, 위 실적은 2021년 진단기관별 진단실적의 총합

☐ 2종 진단기관

No	진단기관명	진단 건수 (건)	진단대상 에너지 사용량 (toe/y)	개선안						
				건수 (건)	에너지 절감량 (toe/y)	절감률 (%)	절감금액 (백만원/y)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온실가스 감축량 (tCO2/y)
1	(주)신덕	20	96,085	102	3,986	4.1	2,219	6,515	2.9	8,264
2	(주)화광이앤이(E&E)	19	81,197	129	8,364	10.3	5,112	5,876	1.1	16,974
3	(주)피이지	17	77,585	103	8,202	10.6	4,430	14,262	3.2	16,758
4	(주)에너지서베이	16	84,722	105	2,570	3.0	1,616	5,769	3.6	5,250
5	(주)세풍전기	14	65,158	79	2,092	3.2	1,204	6,163	5.1	4,244
6	주식회사 에너팩솔루션	12	46,854	63	2,426	5.2	1,404	4,919	3.5	5,117
7	(주)그린테스코	12	62,616	66	4,719	7.5	2,852	4,634	1.6	9,388
8	엔플러스(주)	11	49,762	64	4,324	8.7	1,653	6,543	4.0	9,023
9	에너지절감사업	10	45,623	56	2,229	4.9	1,456	8,120	5.6	4,564
10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8	42,870	52	1,636	3.8	1,017	3,433	3.4	3,355
11	주식회사 에너지프로	8	29,120	45	2,068	7.1	1,199	2,685	2.2	4,376
12	(주)이에스엘	8	33,686	36	1,489	4.4	880	3,173	3.6	3,082
13	(주)오션엔지니어링	5	21,116	13	480	2.3	295	2,294	7.8	1,024
14	하이엠솔루텍(주)	4	14,618	14	559	3.8	484	2,071	4.3	1,131
15	에너지관리기술(주)	4	31,878	27	1,703	5.3	1,043	4,229	4.1	3,591
16	지멘스(주)	3	11,347	12	370	3.3	204	641	3.1	744
17	(주)빌컴	3	22,226	14	615	2.8	329	724	2.2	1,246
18	주식회사 영찬이앤씨	2	14,039	9	522	3.7	233	1,353	5.8	1,044
19	(주)성우이앤씨	2	4,250	12	77	1.8	43	194	4.5	154
20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2	28,944	5	106	0.4	52	59	1.1	211
21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2	5,869	14	443	7.5	313	1,214	3.9	902
22	(주)제이에치에너지	2	8,146	5	14	0.2	6	70	11.2	27
23	주식회사 누리앤소방전기안전	2	14,634	11	452	3.1	239	376	1.6	2,348
24	(주)유호스트	2	9,060	7	117	1.3	88	155	1.8	235
25	(주)네오그린	1	2,348	11	338	14.4	212	442	2.1	682
26	서울에너지공사	1	3,143	7	73	2.3	74	133	1.8	148
27	부산환경공단	1	9,998	5	915	9.2	537	3,342	6.2	1,873
28	(주)기장엔지니어링	1	5,321	5	191	3.6	92	104	1.1	382
29	주식회사 케이티	1	2,348	6	87	3.7	51	225	4.4	179
30	에너지닥터 주식회사	1	2,297	5	199	8.7	121	739	6.1	402
31	(주)에스원	1	6,047	9	84	1.4	53	184	3.5	173
총합계		195	932,906	1,091	51,448	5.5	29,511	90,644	3.1	106,891

* 진단건수 순이며, 위 실적은 2021년 진단기관별 진단실적의 총합

참고

02 에너지진단결과와 개선안 이행시 투자 지원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① **지원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② **지원대상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호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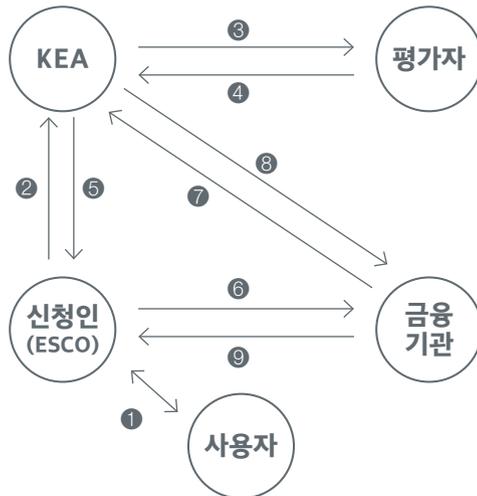
* 단, 성과확정계약은 [별표3]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사업에 한함

③ **지원조건**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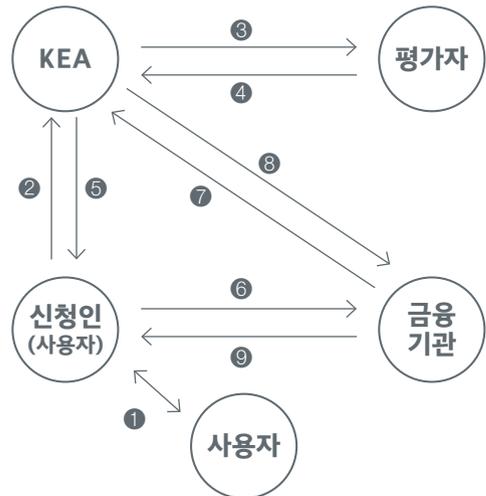
당해년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지원비율
150억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④ 지원절차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및 성과확정계약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① 계약(시공, 설치, 상환, 보증) ② 추천신청 ③ 평가의뢰 ④ 평가완료 ⑤ 추천서 발급 ⑥ 대출신청 ⑦ 대여신청
- ⑧ 대여실행 ⑨ 대출실행

* 성과확정계약은 보증하지 않음



절약시설 설치사업

①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호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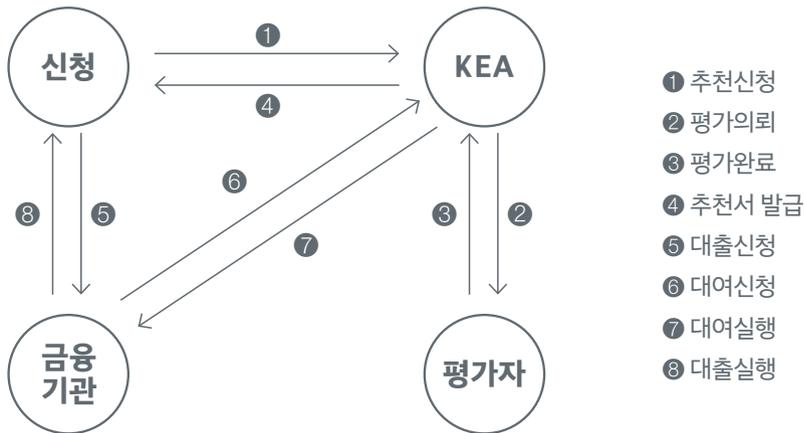
② **지원대상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호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 단,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

③ **지원조건**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당해연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지원비율
15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0% 이내 (단, 중소기업은 90%)

④ **지원절차**



* 위 지원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며, 비평가대상 사업은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대상 설비 적합성 검토 후 추천(비평가대상은 자금 지원지침 제9조 제1항 참조)

참고

03 에너지관리기준

에너지관리기준

① **에너지관리기준**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34조(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5호 「에너지관리기준」

추진목적

- 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①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가공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해당사업장에 환류하여 사업장의 관리능력 향상 도모 및 에너지절감기반 마련

추진방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너지관리기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작성하여 관리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5호 「에너지관리기준」 제4조(에너지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은 에너지진단 수행 시 에너지관리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단보고서에 첨부

점검결과 진단대상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 기술지도 실시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한국에너지공단

공단은 에너지진단 시 진단기관이 제출한 에너지관리기준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지도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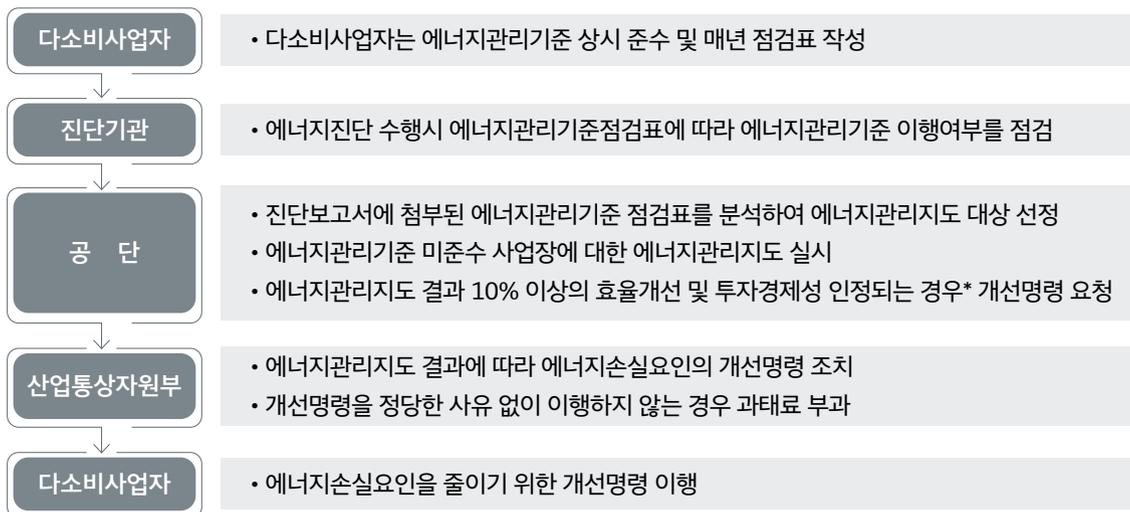
산업	건물
에너지관리기준 점검결과 이행점수 70점 미만	에너지관리기준 점검결과 이행점수 60점 미만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및 [별표7] 에너지 관리지도의 시행여부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추진절차



*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 기대되고, 투자비가 3년 이내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

FAQ. 자주하는 질문



Q₀₁ | 우리 회사(사업장)가 2023년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₀₁ | 연간 에너지사용량(원료 및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전력, 판매전력 등 제외)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 진단 등)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도 진단대상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에 최초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사업장(2021년 실적)
- 2018년에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진단주기 도래)
-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2023년으로 연기 및 면제·연장한 사업장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Q₀₂ | 의무진단 대상사업장이 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₀₂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배정된 진단 시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Q₀₃ | 진단주기 만료기한이 2023년 5월이면, 5월까지 진단을 완료해야 하나요?

A₀₃ | 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진단기관 선정 후 에너지진단 계약을 체결하고, 진단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기관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7조(에너지진단의 신청 등)

Q₀₄ | 이동시설(차량, 항공기 등)이나 자가발전전력, 원료 에너지사용량도 에너지진단 대상 에너지 사용량 선정에 포함되나요?

A₀₄ | 에너지진단 대상설비는 고정시설(보일러, 냉동기, 건조기, 압축기, 요, 로, 회전기기 등 주요 에너지 사용설비)만 해당되며, 원료 및 이동시설(차량, 항공기, 선박 등) 에너지 사용량, 판매전력, 자가발전전력 등은 진단대상 에너지사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 미대상(이동시설) 에너지사용량을 제외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일 경우 의무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₀₅ | 2023년 진단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만약 2022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이 되어도 2023년도에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A₀₅ | 2022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이라면, 당 사업장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니므로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₀₆ | 에너지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안은 꼭 이행해야 하나요?

A₀₆ | 에너지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안의 이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퍼센트 이상 기대되고 투자비가 3년 이내에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Q₀₇ | 에너지진단 연기를 받은 연도에 진단 추진 시 다음 진단주기는 언제인가요?

A₀₇ | 2022년 에너지진단 대상사업장이 에너지진단 연기를 받아 2023년에 진단을 추진한 경우, 다음 에너지진단 주기는 당초에 배정받은 진단주기의 5년 후인 2027년입니다.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Q₀₈ | 진단기관 평가등급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₀₈ | 공단은 진단시장 품질향상 및 우수 진단기관 선택 정보 제공을 위해 [진단기관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단품질, 진단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6등급(S~E)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진단기관 등급제 결과는 P.16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에너지진단 수행시 참고하시어 진단기관 선택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4조(진단기관의 평가 등)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http://min24.energy.or.kr/nedms/front/main/main.do)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에너지진단제도	>>>>	진단기관	>>>>	진단기관 평가등급
--	------	------	------	--------------

Q₀₉ | 에너지관리기준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

A₀₉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은 에너지사용 시설의 관리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너지관리기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5호 「에너지관리기준」 제4조(에너지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http://min24.energy.or.kr/nedms/front/main/main.do)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에너지진단제도	>>>>	에너지 관리기준	>>>>	에너지 관리기준
--	------	-------------	------	-------------

Q₁₀ | 진단을 받았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₁₀ | 공단은 진단대상 사업장의 진단 수행 증빙을 위해 진단 수행 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니, 확인서 발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http://min24.energy.or.kr/nedms/front/main/main.do)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에너지진단제도	>>	진단 대상자 로그인	>>	의무 진단	>>	진단수행 확인서
--	----	------------------	----	----------	----	-------------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산업·안전 관련 법 준수

- ▶ 진단기관측 현장진단시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착용 필수
- ▶ 산업·안전 관련 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진단기관 및 진단대상자에 있음

갑질 근절 및 인권 존중

- ▶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한 이익 추구 금지
- ▶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금지
- ▶ 상생하고 협력하는 환경 조성

갑질피해신고센터(110)

관련 문의

- 에너지진단제도 : ☎ 052-920-0653, 0654, 0656
- 에너지관리기준 : ☎ 052-920-0653
- ESCO 투자사업 : ☎ 052-920-0492, 0494

에너지진단제도 안내 홈페이지 주소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http://min24.energy.or.kr/nedms/front/main/main.do>)
-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에너지진단제도